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59
------	------

2025. 12.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11. 28.) 상정, 질의 및 답변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12. 1.)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민생노동국장 이해선)

1. 제안이유

-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2026년 출연금액(안) : 155,500백만원

-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105억원 + ②신용보증재원 1,450억원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9년에 설립됨.
- 현재 동 재단은 본부(2부문 4실 7부 1센터)와 영업점(2지역본부 2부 30센터)에 임원 3명, 정규직 475명, 기간제 175명을 포함한 65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5.7월 기준)

구 분	정원 내		정원외 기간제	합 계
	임 원	정규직		
정원 / 현원(명)	3 / 3	500 / 475	- / 175	503 / 653

- 동 재단의 사업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 >

구분	주요사업	재원
고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구상권 관리 ◦ 기본재산 관리 ◦ 경영 지도(창업·경영 컨설팅) 	출 연 금
대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청년골목창업 지원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대행사업비

3.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²⁾ 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³⁾에 근거하여 동 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가 교부한 출연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연도별 서울시 출연금 규모4)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 연 금	66	810	1,202	759	168	342	426
신용보증 재원	66	810	809	534	100	189	286
보증료 재원	-	-	393	225	68	153	140

- 그리고 2026년에는 보증료재원 105억원과 신용보증재원 1,450억원을 포함한 총 1,555억원을 출연할 계획임.
- 먼저 보증료재원 105억원은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을 통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 신속드림자금 500억원, 다시서기 프로젝트 600명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임.

< 보증료 지원 세부내역 >

구분	희망동행자금	신속드림자금	다시서기프로젝트
지원대상	경영애로기업 (대환대출용)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성실실패기업, 성실 상환기업, 재창업기업
지원규모	3,000억원	500억원	600명
지원방법	대출금리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금융지원(대출보증, 보증료, 초기자금) 및 비금융지원(교육, 1:1 경영컨설팅)
지원조건	5년간 이차보전 1.8%	4년간 이차보전 1.8%	5년간 이차보전 2.5%
소요예산 (보증료재원)	90억원	9억원	6억원
산출근거	①3,000억원×1.0% (보증료)×4.9년(평균 상환주기) = 147억 ②기 출연금액 중 잔 여액 : 57.8억 ⇒추가 소요액 : 147 억-57.8억=89.2억	500억원×0.5%(보증 료)×3.4년(평균 상환 주기)=8.5억	1인당 최대 1백만원× 600명 = 6억원

4) 서울시를 통한 국비보조금 2020년(100억원), 2021년(93억원) 제외, 2021년 브릿지보증(240억원) 제외

- 그리고 신용보증재원 1,450억원은 동 재단이 2026년에 4조 3,000억원(신규 보증 3조 1,000억원, 기보증의 기한연장 1조 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운용배수⁵⁾를 10배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임.

< 연도별 운용배수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2026년(예상)
보증공급액	31,349	31,366	34,600	43,000
보증잔액 (A)	97,313	80,859	77,600	80,670
연간 출연금 조성액	1,191	1,120	1,243	2,104
서울시	100	189	286	1,450
정 부	129	3	13	-
자치구	113	44	80	25
금융회사법정출연	120	138	143	129 ⁶⁾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729	746	721	500
당기순손실	1,512	2,052	1,990	1,80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	2	-10
기본재산(B)	9,477	8,547	7,798	8,107
운용배수(A/B)	10.3	9.5	10.0	10.0
▶ 연간 출연금 조성액은 서울시 출연금 중 “보증료 보전재원”을 제외한 신용보증재원임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보정)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동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지원과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함.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누적되면서 가계 소비 여력 약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증가, 지속적인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5) 운용배수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로 나눈 값으로, 동 재단이 지원가능한 보증공급 규모를 의미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최대 운용배수를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음.

6) 보증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4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료를 상한(0.1% → 0.3%)과 실제 적용률(0.04% → 0.05%)이 인상되고 개정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었으나, 이 한시적 상향 조치가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임.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대비 각각 1.8%,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IMF(2025.7월 전망)		OECD(2025.6월 전망)		WB(2025.6월 전망)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세계	3.0	3.1	2.9	2.9	2.3	2.4
한국	0.8	1.8	1.0	2.2	-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재단의 보증공급을 전년 대비 8,400억원 확대하고 출연금의 규모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다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출연 동의는 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 받기 전 절차로 출연 규모는 시의회가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 필요성 뿐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재정 여건, 예산의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시의회는 그동안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 규모와 실제 예산 편성 규모 간의 과도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동 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출연계획을 제출하여 동의안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요지

1. 수정이유

-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춰 수정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2026년 출연금 155,500백만원을 예산안에 맞춰 28,710백만원으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59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춰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2026년 출연금 155,500백만원을 예산안에 맞춰 28,710백만원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내용의 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2026년 출연금 예산(안) : 28,710백만원

-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55억 1천만원원 + ②신용보증재원 232억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p>라. 2026년 출연금액(안) : 155,500백만원</p> <p>-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105억원 + ②신용보증재원 1,450억원</p> <p>- 산출근거: (붙임2) 참조</p>	<p>라. 2026년 출연금액(안) : 28,710백만원</p> <p>-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55억 1천만원 + ②신용보증재원 232억원</p>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라. 2026년 출연금액(안) : 28,710백만원
 -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55억 1천만원 + ②신용보증재원 232억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